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88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강경숙 · 문진석 · 서왕진
임호선 · 신장식 · 김준형
황운하 · 김재원 · 박은정
정춘생 · 김선민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인바, 누구든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8까지로 하고,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헌법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헌법 교육) 국가와 지</u> <u>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일</u> <u>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대한</u> <u>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u> <u>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u> <u>법치주의 등 민주주의를 이해</u> <u>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u> <u>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u> <u>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u> <u>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u> <u>한다.</u>
<u>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u> (생 략)	<u>제17조의3(양성평등의식의 증진)</u>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
<u>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u> (생 략)	<u>제17조의4(학습윤리의 확립)</u> (현 행 제17조의3과 같음)
<u>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u> (생 략)	<u>제17조의5(보호자 교육 등)</u> (현행 제17조의4와 같음)
<u>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u> (생 략)	<u>제17조의6(생명존중의식 함양)</u> (현행 제17조의5와 같음)
<u>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u> (생 략)	<u>제17조의7(안전사고 예방)</u> (현행 제17조의6과 같음)
<u>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u> (생 략)	<u>제17조의8(평화적 통일 지향)</u> (현 행 제17조의7과 같음)